



제 428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도매시장 위탁수수료를 통한 의무자조금 지원금 납부〉
■ 송옥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925호)

2025.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 정 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도매시장 위탁수수료를 통한 의무자조금 지원금 납부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송옥주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6. 18.
3. 회 부 일 : 2025. 6.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자조금은 농수산물의 소비촉진 홍보, 자율적 수급 안정 등을 위하여 사용됨.

그런데 도축장을 통한 자동거출방식으로 자조금을 조성하는 한우 등 축산물의 경우 자조금 납부율이 100%에 이르는 반면, 개별 농가를 상대로 자조금을 직접 수납하는 구조인 과채류는 자조금 납부율이 40~50% 수준에 그치고 있어 자조금 조성이 불안정한 실정임.

이에 농수산물 유통의 주요 경로인 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이 징수하는 위탁수수료 중 일정 비율을 농수산물자조금에 대한 지원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자조금 운영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4 신설).

Ⅲ. 검토의견

1. 도매시장 위탁수수료를 통한 의무자조금 지원금 납부

개정안은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이 수취하는 위탁수수료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무자조금에 대하여 지원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4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2조의4(의무자조금에 대한 지원금 납부)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이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징수한 위탁수수료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호에 따라 의무자조금에 대한 지원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농수산물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이란,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농수산물자조금법」”이라 한다)에 따라 농수산업자를 회원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자조금단체가 소비촉진, 품질향상, 자율적인 수급조절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운용하는 자금으로,¹⁾

1) 「농수산물자조금법」에 따른 농수산물자조금은 ① 축산물을 제외한 농산물과 ② 수산물에 설치할 수 있음. 농수산물자조금에서 제외되는 축산물의 경우에는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자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김치산업 진흥법」에 따른 김치자조금 등의 식품자조금이 있음

현재 농산물에 30개(의무자조금 20, 임의자조금 10), 수산물에 14개
(의무자조금 9, 임의자조금 5) 자조금이 각각 설치되어 있음.

【 농산물 자조금 현황(2025. 8. 기준) 】

구분	연번	농산물	자조금단체명	설치년도 (의무전환년도)	재정지원 여부
의무	1	인삼	(사)한국인삼협회	2014년(2015년)	재정 지원
	2	친환경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	2015년(2016년)	
	3	백합	(사)한국백합생산자중앙연합회	2009년(2017년)	
	4	키위	(사)한국키위연합회	2006년(2017년)	
	5	배	(사)한국배연합회	2010년(2017년)	
	6	파프리카	(사)한국파프리카생산자자조회	2000년(2017년)	
	7	사과	(사)한국사과연합회	2010년(2017년)	
	8	감귤	(사)제주감귤연합회	2008년(2017년)	
	9	콩나물	(사)대한두채협회	1994년(2017년)	
	10	참외	(사)한국참외생산자협의회	2006년(2018년)	
	11	절화	(사)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	2019년(2019년)	
	12	포도	(사)한국포도협회	2010년(2019년)	
	13	마늘	(사)한국마늘연합회	2010년(2020년)	
	14	양파	(사)한국양파연합회	2010년(2020년)	
	15	뽕은감	(사)한국뽕은감협회	2018년(2021년)	
	16	복숭아	(사)한국복숭아생산자협의회	2008년(2021년)	
	17	차	(사)한국차자조회	2003년(2022년)	
	18	자생란	(사)한국난재배자협회	2003년(2022년)	
	19	블루베리	(사)한국블루베리연합회	2021년(2025년)	
	20	밤	(사)한국밤재배자협회	2022년(2025년)	
임의	1	가지	(사)한국가지생산자협의회	2005년	재정 미지원
	2	오이	(사)한국오이생산자협의회	2008년	
	3	풋고추	(사)한국풋고추생산자협의회	2012년	
	4	단감	(사)한국단감연합회	2009년	
	5	무배추	(사)한국무배추생산자연합회	2010년	
	6	고추	(사)한국고추산업연합회	2010년	
	7	딸기	(사)한국딸기생산자대표조직	2006년	
	8	밀	(사)국산밀산업협회	2010년	
	9	버섯	(사)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	2024년	재정 지원
	10	논콩	(사)한국논콩자조회	2024년	

※ 자료: 농식품부 제출

【 수산물 자조금 현황(2025. 8. 기준) 】

구분	연번	수산물	자조금단체명	설치년도 (의무전환년도)	재정지원 여부
의무	1	김	(사)한국김산업연합회	2004년(2023년)	재정 지원
	2	전복	(사)한국전복산업연합회	2010년(2023년)	
	3	광어	(사)한국광어양식연합회	2009년(2023년)	
	4	송어	(사)한국송어양식협회	2006년(2019년)	
	5	항어	(사)전국내수면항어양식협회	2013년(2023년)	
	6	메기	(사)한국메기양식중앙연합회	2014년(2023년)	
	7	관상어	(사)한국관상어협회	2016년(2023년)	
	8	민물장어	(사)한국민물장어생산자협회	2013년(2023년)	
	9	굴	(사)한국굴수하식연합회	2022년(2024년)	
임의	1	미역	(사)고흥미역다시마생산자연협회	2022년	
	2	새우	(사)한국새우양식총연합회	2024년	
	3	붉은대게	(사)전국붉은대게근해통발협회	2016년	
	4	바다장어	(사)전국근해바다장어통발생산자협회	2020년	
	5	참조기	(사)제주참조기근해자망생산자협회	2020년	

※ 주: 어획수산물은 붉은대게, 바다장어 및 참조기가 해당하며, 그 외는 양식수산물임

※ 자료: 해수부 제출

자조금은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가 납부하는 거출금(醵出金)과 정부 지원금을 주요 재원으로 조성되며, 특히 의무자조금의 경우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에게 거출금 납부의무²⁾가 존재하여 임의자조금에 비해 자조금 조성 및 운용의 안정성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음.

그런데, 의무자조금이라 하더라도 농산물 의무자조금의 거출률³⁾이 2024년에 82.2%로 나타나는 등, 실제로는 부과된 거출액을 완전하게 수납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임.

2)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무거출금의 납부) ① 의무자조금이 설치된 농수산물의 경우 농수산업자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한 납부일자 이내에 총회에서 의결한 의무거출금의 금액을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납부면제 기준에 해당하는 영세 농수산업자에 대하여는 그 납부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제37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의무거출금 납부일자 이내에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3) 거출금 부과액 대비 실제 거출액 비율

【 2024년 농산물 의무자조금 거출률 】

(단위: 백만원, %)

연번	농산물	거출금 부과액(A)	거출액(B)	거출률(B/A)
1	인삼	683.2	717.6	105.0
2	친환경	2370.3	2264.7	95.5
3	백합	640.0	640.0	100.0
4	키위	486.6	227.4	46.7
5	배	753.9	941.0	124.8
6	파프리카	1207.7	1293.1	107.1
7	사과	2077.6	2078.2	100.0
8	감귤	1671.3	1672.6	100.1
9	콩나물	141.4	172.5	122.0
10	참외	402.0	402.0	100.0
11	절화	785.0	785.0	100.0
12	포도	1590.6	817.6	51.4
13	마늘	1195.8	995.0	83.2
14	양파	1019.9	1186.6	116.3
15	뽕은감	1309.8	307.0	23.4
16	복숭아	1991.1	722.1	36.3
17	차	321.1	62.4	19.4
18	자생란	432.1	389.7	90.2
총계		19,079.4	15,674.3	82.2

- ※ 주1: 과거 부과된 거출금을 2024년에 납부받은 경우가 있어 거출률이 100%를 초과할 수 있음
 ※ 주2: 블루베리와 밤은 2024년까지는 임의자조금이었음(2025년부터 의무자조금)
 ※ 자료: 농식품부 제출

이러한 거출금과 정부의 지원금 외에도, 자조금은 자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과 농수산물의 유통·가공·수출·수입 등과 관련된 자의 지원금을 통하여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데,⁴⁾

4)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의무자조금의 재원) 의무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의무거출금
2. 정부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3. 농수산물의 유통·가공·수출·수입 등과 관련된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지원금
4. 의무자조금 운용수익금 등 그 밖의 수익금

시행규칙 제8조(의무자조금에 대한 지원금 납부자) 법 제7조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등기를 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의무자조금 품목의 중자업자, 유통업자, 수출업자 및 수입업자
2. 해당 의무자조금 품목을 원료로 하는 제조업자 및 가공업자

이 중에서 농수산물의 유통·가공·수출·수입 등과 관련된 자의 지원금의 경우, 해당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수산업자가 아니더라도 자조금단체에 납부할 수 있는 자금임.

예를 들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유통종사자들 역시 해당 농수산물의 유통업자로서 지원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해당 지원금에 대하여는 의무자조금의 거출금과는 달리 어떠한 납부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자율적으로 납부하는 것일 뿐 납부가 강제되는 것은 아님.

개정안은 이와 같은 지원금과 관련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이 산지의 출하자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위탁수수료의 일정 비율을 지원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⁵⁾

의무자조금이 거출금 및 정부의 지원금 외에도 가외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조금 조성 및 운용의 안정적인 기반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보임.

그러나, 농수산물의 유통업자인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은 이미 개정안과 무관하게 「농수산물자조금법」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납부할 수 있으므로,

5) 참고로, 농협·수협 등이 운영하는 도매시장공판장 역시 도매시장법인과 동일한 농수산물 수집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산지 출하자 등으로부터 위탁수수료를 징수하는데, 개정안에서 도매시장공판장의 운영 및 거래방법에 있어 도매시장법인의 경우를 준용하도록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제46조제1항에서 안 제42조의4를 준용하도록 하지 않는 이상, 도매시장공판장에 대하여는 개정안의 내용이 적용되지 않음

개정안은 ‘부령으로 정하는 위탁수수료의 일정 비율’이라는 납부 수준을 새로이 제시하는 것 외의 실질적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 법령에 의해서도 지원금의 납부주체가 될 수 있는 ‘농수산물의 유통과 관련된 자’ 중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적 책임을 환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16